

원규심의위원회 운영지침

[제정 2011. 5. 16]

[개정 2011. 10. 26]

[개정 2012. 6. 7]

[개정 2013. 7. 24]

[개정 2013. 11. 25]

[개정 2014. 5. 23]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 정관 제35조 및 원규관리 운영규칙 제13조에 의거 원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3.11.25)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8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하며, 심의 사항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(개정 2012.6.7, 2013.7.24, 2013.11.25)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2.6.7, 2013.7.24)

1. 경영기획본부장

2. 직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조직의 장(개정 2013.11.25)

3. (삭제 2013.11.25)

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대리인은 직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조직 중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.(신설 2012.6.7, 개정 2013.7.24, 2013.11.25)

④ (삭제 2013.11.25)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.(개정 2013.11.25)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, 의결권을 가진다.

③ 위원장이 불참 등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, 위원장이 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의 직제 및 직위 순에 따라 결정하며, 직위가 직제에 우선한다.

제4조(간사) ① 간사는 직무분장 운영규칙에 의거 원규 제·개정을 소관하는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서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원규의 제정 및 개폐

2. 기타 원규와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.(개정 2014.5.23)

제6조(소집) ① 위원회의 소집은 진흥원의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

② 간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한다.

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(신설 2013.11.25)

제7조(제안설명) 위원회 안건은 원규관리 운영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 원규의 제정, 개폐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이 설명한다. 다만, 소관부서의 장이 유고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사 또는 소관부서의 실무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의결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②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원장이 확정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 및 기피)(신설 2011.10.26)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사유 등에 따라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

제8조의3(회의록 등의 작성 및 보관)(신설 2011.10.26)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, 일시 및 장소,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, 상정안건, 발언 요지,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칙)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1. 5. 16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0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6. 7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7. 24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1. 25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5. 23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